

『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10월 27일

나. 발 의 자 : 박주연, 김성현, 김재상, 김정곤, 김정미,  
김태근, 박교상, 윤종호, 이수태, 임춘구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10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11월 8일

제1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박주연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민에게 기술습득을 장려하고 기술 향상을 촉진함과 동시에 구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숙련기술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정진하도록 하며,
- 나아가 구미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숙련 기술자의 사회적·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다. 주요내용

- 시장은 최고장인을 선정함에 있어 구미시최고장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명 이내 선정하여 매월 20만원을 3년간 지급 (총액 7,200만원)
- 숙련기술자에게 공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선진지 연수 등 실시 및 숙련기술자에 대한 홍보 및 지원대책 마련
- 최고장인의 선정(안 제3조)
- 최고장인의 자격요건(안 제4조)
- 최고장인의 추천(안 제5조)
- 최고장인의 예우 및 지원(안 제6조)
-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, 구성, 기능(안 제7조, 제8조 및 제9조)
- 숙련기술자 단체의 지원, 우대, 홍보, 관리 및 후원(안 제12조,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)

## 라. 참고사항

- 「숙련기술장려법」 제3조, 제10조, 제11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22조
- 「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」 제10조, 제14조, 제15조, 제18조, 제20조, 제22조, 제24조
- 「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#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희철

-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숙련기술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미의 기술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술자를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,
- 상위법인 「숙련기술장려법」 및 동법시행령과 맞으며, 근로자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고, 산업도시 구미의 가치상승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.
- 조례안의 내용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과 최고장인 선정·지원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장과 협의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